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07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1구합7159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
원 고	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○
	담당변호사 권진숙
피 고	○○시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○○○, ○○○
변 론 종 결	2023. 3. 30.
판 결 선 고	2023. 4. 20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9. 10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,749,971,140원, 지방교육세 326,053,270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07

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○○시 B 일대 14,138㎡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「○○ A 도시환경정비사업(이하 '이 사건 정비사업'이라 한다)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지하 5층, 지상 42층의 주상복합 건축물(공동주택 536세대, 상점 13호 및 대형마트, 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합니다)를 신축하고,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동주택 27세대, 상점 1호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, 나머지 잔여분 중 공동주택 5세대는 보류시설로, 공동주택 504세대 및 상점 12호, 대형마트는 체비시설로 각 지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, 피고는 2013. 11. 11.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, 2013. 11. 13. 이를 고시하였다.

다.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연면적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146,255,856㎡(= 공동주택 89,378.316㎡ + 상점 19,160.42㎡ + 대형마트 37,717.12㎡)으로 확정되었다.

라. 원고는 2018. 11. 22. 위 연면적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, 2018. 12. 13. 아래의 [표]과 같이 취득가액 207,988,468,4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(1천분의 28)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,749,971,150원, 지방교육세 326,053,270원, 농어촌특별세 165,469,100원을 신고하였으며, 2018. 12. 18. 위 신고금액에 대한 납부를 마쳤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07

[표] 경정청구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·납부 내역

취득물건		신고세액 (원)			
구분	면적	합계	취득세	지방교육세	농어촌특별세
		6,241,498,520	5,749,971,150	326,053,270	165,469,100
85㎡ 이하 공동주택	84,313.260㎡	3,648,220,130	3,451,019,050	197,210,080	
85㎡ 초과 공동주택	2,426.736㎡	112,099,330	99,328,530	5,675,910	7,094,890
상가건물	56,625.130㎡	2,432,731,550	2,155,584,920	123,176,280	153,970,350
지목변경	14,207,500㎡	48,442,510	44,038,650	0	4,403,860

마. 이후 원고는 2019. 10. 10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시설로 인가받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504세대 및 판매시설(상점 12호, 대형마트)과 그 부속 토지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4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6,076,024,410원(= 취득세 5,749,971,150원 + 지방교육세 326,053,270원)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, 피고는 2019. 10. 25. 이를 거부하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바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. 10. 31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, 2023. 2. 28. 이 사건 처분 중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44,038,650원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, 조세심판원은 2023. 3. 3. 이 사건 처분 중 위 44,038,65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.

마. 피고는 2023. 3. 24.경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지목변경에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07

따른 간주 취득세 44,038,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5,705,932,490원(= 5,749,971,150원 - 44,038,650원), 지방교육세 326,053,270원의 각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에게 위 5,705,932,490원 및 326,053,270원을 환급해주었다.[1)]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나. 이 사건 처분 중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 44,038,650원 부분에 관하여

1)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에서는 '제89조(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)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'고 규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다.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, '지방세관계법은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.

2) 살피건대, 이 사건 처분 중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취득세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.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 부분을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그렇다면, 이 사건 처분 중 목변

1) 피고는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농어촌특별세도 환급해준 것으로 보인다(갑 제15호증)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07

경 간주 취득세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.

다. 이 사건 처분 중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

1)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,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).

2) 살피건대, 앞서 살펴 바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, 조심심판원은 2023. 3. 3.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, 이에 따라 피고가 2023. 3. 24.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, 소송비용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와 범위,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07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07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기본법

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"지방세관계법"이란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을 말한다.

제89조(청구대상)

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
제9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「행정소송법」 제18조 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(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「국세기본법」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)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<제16854호, 2019.12.31>

제11조(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)

① 제9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■ 지방세법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① 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양식업권,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(이하 이 장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6-07

■ 지방세특례제한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74조(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)

①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(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)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(상속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,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(이하 이 항에서 "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"이라 한다)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

1.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
2.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.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(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)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.